



## 경유 다목적차 관련 공동위원회 합의문

● 환 경 부 ●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기업·시민 공동위원회」는 최근 경유 다목적자동차의 차종 분류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했으며 경유 승용차 허용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기업·시민 공동위원회」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경유 다목적자동차에 대한 생산중단과 관련하여 3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불임과 같이 최종합의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공동위원회의 합의내용을 토대로 6월 26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를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였다.
- 공동위원회는 이번에 다목적차에 관한 사항을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경유승용차 배출가스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를 경유차 전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검토하고,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연료품질기준 강화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불임 : 경유 다목적자동차 관련 공동위원회 합의문**

### 〈불임〉

### **경유 다목적자동차 관련 공동위원회 합의문**

1. 경유 다목적자동차의 차종 분류기준은 국제적 기준과 부합되도록 유럽연합(EU)의 분류방식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한 기준상 「프레임(Frame)」이 없는 2륜구동의 8인승 이하 차량으로서 총 중량 3.5톤 미만이고, 높이 1,800mm, 폭 2,000mm이하인 차량을 승용차(승용1)로 분류하던 것을 「8인승 이하, 총중량 2.5톤 미만의 차량」을 승용차(승용1)로 분류토록 한다.

- ② 현행 고시에 의한 기준상 「프레임」이 있고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가 있는 차량」을 다목적형 자동차(승용2)로 분류하던 것을, 「프레임이 설치되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 등 혐로 주행을 위한 기능을 갖춘 차량」을 다목적형 자동차(승용2)로 분류토록 한다.

2. 위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랜드로버의 「프리랜더」, 다임러크라이슬러의 「그랜드보이저」 등 3 차종은 계속 생산·수입을 허용하되, 해당 차종의 계속 판매허용에 따라 해당 차량에서 배출이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그 배출 산정량 이상을 해당 제작사가 생산하고 있는 다른 차종에서 삭감하여 총량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① 삭감대상량 : NOx 1,203톤, PM 129톤

\* 위의 차종의 계속 생산판매 시 「02.7 월부터 「03.12말까지 1년 6개월간 배출되는 오염물질량(NOx 1,438톤, PM 129톤)에서 생산중단 시 LPG다목적차로 100% 전이된다고 가정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량(NOx 235톤, PM 0톤)을 뺀 값

\* 상기와 같이 LPG 다목적차로 100%

전이된다고 가정하면 NOx, PM은 감소하나 CO 및 HC는 각각 1,991 톤, 123톤 증가

② 삽감계획량 : NOx 1,509톤, PM 194 톤

※ 삽감대상량(NOx 1,203톤, PM 129 톤) 보다 각각 25%(306톤), 50%(65 톤) 초과 삽감 가능

③ 삽감방법(자동차제작사)

- '스포티지' 등 구형 기계식 엔진을 탑재한 차종은 조기 단종한다.
- '5톤 슈퍼중형트럭'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조기 대체한다.
- '스타렉스' (승합차)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확대 보급한다.
- 경유 RV(Recreational Vehicle)차로 생산하고 있는 '쏘렌토'를 '02년 9 월 이후 휘발유차로 개발 판매함으로써 휘발유 RV차로 일부 대체한다.
- 총 25만대의 모든 차종의 경유 운행 차에 대해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초과 차량(점검대수의 16% 예상)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비를 실시한다.

3. '카렌스-II(경유차)' 와 '트라제 7인승'은 금년 7월 1일부터 생산을 중단한다. 다만, '카렌스-II'의 경우에는 현행 유럽연합의 기준인 EURO-3 수준(NOx : 현재 0.69 → 0.39g/km, PM : 현재 0.06 → 0.03g/km)으로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시점에서 '02.12.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재개를 허용하되, 그 이후의 계

속 생산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경유승용 차배출가스기준 조정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한다.

4. 경유승용차 기준 개정에 관련하여 현행 및 '06년까지 조정예정인 자동차 연료 가격체계(휘발유:경유:LPG 가격비율)의 합리화가 필수조건으로, 이를 조속히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에너지가격체계의 친환경적인 개편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 그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경유승용차 허용 여부와 결부하여 계속 논의한다.

5. 상기 합의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사(현대·기아자동차)는 상기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전문가와 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미 이행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공동위원회는 동 내용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정부는 즉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토록 한다.

2002. 6. 24일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기업·시민 공동위원회」  
시민단체측 위원장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덕승  
정부측 위원장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고윤화